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02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박홍배 · 안태준 · 이수진
손명수 · 김문수 · 이언주
어기구 · 박상혁 · 강준현
박민규 · 권향엽 · 전현희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록·지정제도와 회계부정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감사의 품질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제6항).
-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6항 및 제7항).
- 다.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의2).
- 라.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12호).
- 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및 별표 1).
- 바.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47조).
- 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종전 감

사인에 대한 제재처분 및 진행 중인 과태료 부과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승계 감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등록 및 취소”를 “등록, 취소 및 말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의 사유 및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말소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감사인 선정 관련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선정 또는 승인에 관여하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감사인으로 선정되기 위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 후보”라 한다)의 임직원인 경우 등 감사인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감사인 선정 또는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감사인의 선정 또는 승인에서 제척된다.

② 감사인 후보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감사인 선정 또는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사인의 선정 또는 승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29조제3항제1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으로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

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在任)을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기간

③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등이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기준,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종전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게 제29조제3항에 따라 한 조치의 효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승계되며,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에 한 행위에 대한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

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행한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9조의2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별표 1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인회계사의 교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인 선정 관련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의 변경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변경을 포함한다.

제5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1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선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 ⑤ (생략)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 ⑤ (생략) <신 설> <신 설>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취소 및 말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의 사유 및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신 설>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말소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감사인 선정 관련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선정 또는 승인에 관여하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감사인으로 선정되기 위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 후보”라 한다)의 임직원인 경우 등 감사인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감사인 선정 또는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감사인의 선정 또는 승인에서 제척된다.

② 감사인 후보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감사인 선정 또는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11. (생략)

<신설>

12. (생략)

② ~ ⑦ (생략)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사인의 선정 또는 승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②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 7. (생략)

④ ~ ⑦ (생략)

<신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등록 또는 주권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在任)을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기간

③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등이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및 그

<신 설>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기준,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종전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게 제29조제3항에 따라 한 조치의 효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승계되며,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 ② (생략)
<신설>

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에 한 행위에 대한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행한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주

<신 설>

③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
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과태료) <신 설>

권상장법인 감사인이 한 행위
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④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을 부과받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
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그 과징금은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
장법인 감사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⑦ -----제6항까지에서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9조의2제3항 전단을 위반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u>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u> 3.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제5항까지의----- ----- ----- -----.
--	---